

# 2023 경남 영화·영상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

(재)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도내 영화·영상 문화 활성화 및 영상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2023 경남 영화·영상 활성화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5월 31일

(재)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

## 1 | 사업개요

- 사업명: 2023 경남 영화·영상 활성화 지원사업
- 사업기간: 2023. 5. ~ 12월
- 사업내용: 지역 영화·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업 지원
- 지원분야: 3개 분야(행사, 홍보·마케팅, 네트워킹)
- 지원규모: 총 지원금 47,000천원
  - 4건 내외/ 과제별 1천만원~최대 1천5백만원 차등지원
- 지원대상: 경남에 소재지를 둔 영화·영상관련 단체 및 개인

※ 자격요건: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상활동 실적이 있는 경남 소재 단체  
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

- 지원내용
  - 지역 영화·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지원(영화제, 축제 등)
  - 영화·영상관련 프로젝트 홍보·마케팅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
- 주최/주관: 경상남도/(재)경남문화예술진흥원

## 2 | 지원내용

- 지원기간: 이행약정체결일 ~ 2023. 12. 15.
- 지원규모: 총 4건 내외(건당 1천~1천5백만원 내외 차등지원)
- 지원분야: 3개 분야(행사, 홍보 · 마케팅, 네트워킹)
- 세부 지원내용

지원분야	세부 지원내용
행 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지역 영화·영상 관련 축제 및 행사 운영 지원 등</li><li>- 전시, 영화제, 상영회, 홍보관 등 영상 관련 프로젝트 지원</li><li>- 영상을 통한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등</li></ul>
홍보·마케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영화·영상 관련 프로젝트 브랜딩, IR, 프로모션 지원 등</li><li>- 영화·영상 관련 온·오프라인 홍보 지원(매체홍보, 홍보물 제작 등)</li></ul>
네트워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자체 기획 워크숍, 영상교육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등</li><li>- 비즈니스 매칭 등 지원을 통해 기업 간 관계 구축 및 영상산업 관심도 제고 목적으로 부합하는 프로그램</li></ul>

## 3 | 지원대상 및 자격

- 지원대상: 경남에 소재지를 둔 영화·영상관련 단체 및 개인
- 지원자격: 경남에 소재지(거주지)를 두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

구 분	자격요건
단 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상활동 실적이 있는 경남 소재 단체</li></ul>
개 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</li></ul> <p>* 1년 이상 거주사실이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수</p>

### ※ 지원제외 대상

- 동일, 유사 사업으로 당해연도 진흥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및 개인
- 경상남도 및 진흥원의 참여 제한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
- 최근 2년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, 지원내역이 허위일 경우

\*사업선정 후에도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면 사업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납 조치

## 4 | 신청 및 접수방법

- 공고기간: 2023. 5. 31.(수)~6. 20.(화) 14:00 / 21일 간
- 접수기간: 2023. 6. 9.(금)~6. 20.(화) 14:00 / 12일 간

### ※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

- 접수처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[www.ncas.or.kr](http://www.ncas.or.kr)
- 접수방법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온라인 접수
  - 공모명: 2023 경남 영화·영상 활성화 지원사업
  - 공모기관(보조금 주관기관): 경남문화예술진흥원
- ※ NCAS 시스템에서 접수기간에만 제출 가능함
- ※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서버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접수 요망
- 제출서류

연번	제출서류	제출형식	내용	비고
1	지원사업 신청서	한글파일 (hwp 또는 hwpx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</li><li>- 단체(개인) 소개서</li><li>- 증빙서류</li><li>[단체] ①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(*해당시) ②활동실적자료</li><li>[개인] ①주민등록초본(거주지 및 거주기간 증빙)</li><li>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</li><li>- 확약서</li><li>-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·예방 서약서</li></ul>	
1-1	지원사업 신청서 (스캔본) ※ 필요 서류별 날인 필수	PDF파일		서식 내 작성
2 (2-1)	발표자료	PDF파일 (ppt 별첨가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제출한 신청서 위주의 내용으로 발표자료 작성(10분 이내 분량)</li><li>※ 영상 및 사운드가 포함된 경우 ppt파일 형식 별첨</li></ul>	자유 서식

※ 상기 제출서류들을 ZIP파일로 압축하여 NCAS 시스템에 첨부

※ 접수기간 내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### ○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

- 제출서류를 **1개의 ZIP파일** 등으로 압축하여 NCAS 시스템에 첨부
  - 압축파일명 : **2023 경남영화영상활성화지원\_단체(개인)명.zip**
  -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, zip파일명에 숫자를 붙여 구분하여 각각 업로드

※ 제출파일 예시



- 상기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
-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최종 선정 이후에는 상기 제출서류 외 최종 수행계획서, 지원금 전용 통장사본 등의 추가 서류 제출 필요

▶ **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[www.ncas.or.kr](http://www.ncas.or.kr))을 통한 신청 · 접수 방법**

- 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(대표자 또는 단체명의)
- ②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([www.gcaf.or.kr](http://www.gcaf.or.kr))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
- ③ ②에서 작성한 신청서 및 발표자료 등 제출서류를 zip파일로 압축
- ④ 접수기간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접속 후 로그인
- ⑤ 메인 화면에서 보조금 주관기관을 '경남문화예술진흥원'으로 선택
- ⑥ '현재 신청가능한 지원사업' 목록에서 '[2023 경남 영화영상활성화 지원사업](#)' 선택
- ⑦ [신청개요]란 작성 후 [첨부파일]란에 ③의 압축파일을 첨부하여 최종제출

※ 접수마감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추가 접수 및 수정 불가

※ 접수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나,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최종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접수기간 내 지원신청 취소 후 재신청 해야함

※ 지원신청 시 지원사업명 확인 필수

## 5

## 추진일정[안]

구 분	일 정	비 고
사업공고	2023. 5. 31.(수)~6. 20.(화)	
지원신청서 접수	<b>2023. 6. 9.(금)~6. 20.(화) <u>14:00</u></b>	<b>NCAS</b>
사전 서류검토(적격여부 등)	2023. 6. 20.(화)~6. 26.(월)	
선정 심사(서류 및 발표심사)	2023. 6. 27.(화) <예정>	심사일정 누리집 통보
선정발표	2023. 7. 3.(월) <예정>	누리집 및 개별통보
약정체결 및 지원금 교부	2023. 7월 중	
지원사업 진행	약정체결일~2023. 12. 15.(금)	
결과보고 및 정산	2023. 12월~2024. 1월	

## 6 선정방식

### ○ 심사방법: 서류 및 발표심사

#### ※ 발표심사 안내

- 일시/장소: 2023. 6. 27.(화) 예정 / 장소 미정
- 발표방법: 신청 시 제출한 발표자료 내용을 심사위원에게 발표
- 발표자: 신청주체(단체대표 또는 개인신청자 본인)

\*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심사안내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.

- 적격여부 검토 결과 자격요건에 미달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결격사유가 있는 과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결격사유가 사후 확인되는 경우에도 적용됨

### ○ 심사기준

구분	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서류 및 발표 심사	사업타당성	- 사업기획의 우수성, 독창성, 구체성 등	30
		- 지원사업 필요성 및 지역 영상산업 기여도	20
	사업비의 적정성	- 사업 예산 계획의 적정성	20
		- 추진일정의 적정성 및 홍보계획	20
	사업추진역량	- 참여인력 전문성 및 사업추진 체계의 안정성	10
<b>총점</b>			<b>100</b>

※ 최종 점수 70점 미만 부적격 처리

### ○ 선정발표: 2023. 7. 3.(월) 예정 ※ 누리집 공지 및 개별 통지

## 7 유의사항

- 본 사업의 신청,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규정, 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단체 및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예산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항목은 편성될 수 없습니다.
- 사업 결과물의 저작권은 신청단체에 귀속되나, 경상남도와

진흥원의 홍보 또는 공익의 목적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.

- 개발된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, 초상권 등 모든 분쟁사항 대한 일체의 책임과 관리는 신청단체에게 있습니다.
- 지원금은 보조금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.
- 신청자는 본 지원사업에 1건만 지원신청 가능합니다.(중복신청 불가)
-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선정자는 이행약정 체결 시 지원금의 100%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지원금은 신청주체 명의의 별도 통장과 전용 카드를 통해 관리해야 하며, 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해야 합니다. ※ 선정 후 지원금 집행 · 정산 관련 별도 교육 예정
- 지원금 교부 이후 집행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하며, 교부 이전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사업 결과물(홍보물, 책자 크레딧, 영화 크레딧 등)에 「2023 경남 영화 · 영상 활성화 지원사업」의 지원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.
- 이행약정 기간 내 지원사업 추진 완료가 원칙이며, 이행약정 체결 후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고 향후 3년 간 동일 사업에 지원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진흥원이 주관하는 워크숍, 성과공유회 등의 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.
- 지원금 집행 시 고용보험(예술인 고용보험 포함), 소득세 원천징수 등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타 지자체 · 공공기관 등의 동일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합니다.
- 본 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.

## 8 | 문의

- 지원사업 관련: 대중문화산업팀 변다빈  
☎ 055)230-8824 ☐ [dabin@gcaf.or.kr](mailto:dabin@gcaf.or.kr)
- 시스템 관련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☨ 1577-8751

## 불 임

##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

<2023 경남 영화·영상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>

목	세목	용 도	비 고
인 건 비	강연비	- 특강, 교육프로그램 강연 등의 사례비	
	전문가 활용비	-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가 사례비(프로그래밍, 전시기획 등) - 사진촬영, 공연팀, 진행자 인건비 등 기타 사례비	• 인건비 지급 시 원천징수 필수 • 지원금으로 대표자 및 내부직원 인건비(기획운영비) 편성 불가 (단, 직접적으로 맡은 역할이 있고, 결과물 증빙이 가능한 경우 진흥원 담당자 협의 후 편성 가능)
	기간근로 보수	- 행사 보조요원, 사업보조 단기근로자 운영비	
일 반 수 용 비	인쇄비	- 포스터 제작, 현수막, 배너 등 홍보물 출력비 - 각종성과물(결과자료집) 및 교육 자료 인쇄비	
	재료비	- 행사운영을 위한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- 행사 운영을 위한 참가자 식비 및 다과비	• 자산성 물품 구매 불가 (단, 임차가 불가능하고 사업에 꼭 필요한 물품의 경우 담당자 협의 후 편성)
행 사 홍 보 비	홍보물 제작비	- 홍보·마케팅을 위한 홍보물품(굿즈) 제작비	• 상품 및 경품 구매 불가 (제작 홍보물품의 이벤트 사용은 가능)
	광고비	- 매체홍보, SNS 유료 프로모션 비용 등	
	일반 용역비	- 전문 외부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통한 대행비 (홍보영상제작, 광고마케팅, 무대디자인 등)	• 사업내용 중 일부 전문성이 필요한 항 목에 대해서만 편성
임 차 료	임차료	-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, 건물 등의 임차료 - 행사 진행에 따른 각종 물품 대여비(장비, 의자 등)	
업 무 추 진 비	회의비	- 행사 추진을 위해 필요한 회의식비	• 총 사업비의 5% 이내 책정 가능 • 회의식비는 1인 15,000원 이하 사용
	교통비	- 필수행사 참여를 위한 진행인력의 교통비 (진흥원 성과공유회 포함)	• 교통비는 실비기준 인정 (자차 운행 시 시외버스요금 기준)

### □ 불인정 예산 항목

- 주류 구입 불가, 사업과 관계없는 식사비 지원 불가
- 인건비는 단체의 대표, 내부 직원이나 가족 대상으로 지급 불가
- 가구(의자, 책상, 인테리어 소품), 전산기기 및 전산소모품(프린터, 프린터 잉크, 배터리 등), 의복, 침구 등 자산 및 개인용품으로서 소장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불인정
-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(주차비, 전기요금, 가스요금, 전화요금, 계좌이체 수수료), 과태료 불인정
- 이 밖에 사업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예산 불인정